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17. 5. 18.
행정위원회

1. 심 사 경 과

가. 제출일자 : 2017년 5월 11일

나.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다. 회부일자 : 2017년 5월 11일

라. 상정일자 : 제200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위원회(2017. 5. 16.)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 재정국장 서종석)

가. 제안이유

- 서울특별시로부터 시달된 표준조례안에 따라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지방세 자진납부 유도 및 모범납세자를 우대하고, 수수료 징수액을 개정하여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맞게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 감면조항 신설(안 제5조제1항제12호)
-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 중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 사실증명, 의료기간 약국(휴·폐업)사실증명의 징수금액 폐지(안 제3조 관련 별표)
-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수정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 최광목)

- 본 개정조례안은 각기 다른 지방자치단체 모범납세자 지원 관련 조례의 통일된 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서울특별시의 모범 납세자 지원제도 개선 방침에 따라, 2016년 8월 서울특별시에서 자치구 수수료 징수 조례 표준안을 마련하여 각 자치구에 시달되었으며, 이에 본 개정조례안 내용에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수수료 감면조항 신설 내용을 반영하였음.
- 또한, 구민창안 공무원 제안제도 운영계획(2017)에 따라 ‘규제개혁으로 행복한 영등포 만들기’ 지정제안 공모제 선정 및 장기간 경기 침체에 따른 구민의 부담을 해소하고자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 의료기간 약국(휴·폐업)사실증명 수수료 징수 금액을 폐지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문을 정비하였음.
-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 조항 신설과,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 및 의료 기간 약국(휴·폐업)사실증명 수수료 징수 금액 폐지로 감소 되는 수입은 각각 연간 1백7십7만6천원과 7만7천원으로 우리구 재정수입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모범납세자에 대한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수수료 감면에 따른 수입 감소는 다음 회계연도에 서울특별시에 서 각 자치구에 재정보전 할 예정임.
- 따라서, 모범납세자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발급 시 수수료 면제 혜택 제공은 우리 구 재정확충에 기여하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예우 및 모범 납세자 스스로 자긍심을 높이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으며, 일반 납세 의무자의 납세의식 고취에도 크게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 의료기간 약국(휴·폐업)사실증명 수수료 징수 금액 폐지는 경기 침체에 따른 구민의 부담을 해소하는 적극적인 행정으로 주민의 만족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됨.

4. 심사결과 : 원안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의안 번호	제 219 호
----------	---------

제출연월일 : 2017. 5.

제 출 자 : 영등포구청장

1. 제안이유

서울시 모범납세자의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비용을 면제하여 성실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고, 변화하는 행정환경의 맞게 일부 증명서의 발급수수료를 폐지하여 국민의 편의증진과 업무효율을 높이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선정된 모범 납세자의 세목별 과세 증명서 발급 수수료 면제 근거조항 마련
- 나. 우리 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 중 식품환경 영업허가(휴·폐업)사실증명, 의료 기관약국(휴·폐업)사실증명의 발급에 따른 징수금액의 폐지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1)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
- 2)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

나. 예산조치 : 해당없음

다. 협의사항

- 1) 규제심사 : 신설·강화되는 규제사무 없음
- 2) 부패영향평가 : 원안동의
- 3) 성별영향분석평가 : 원안동의
- 4) 인권영향평가 : 원안동의

라. 기타사항

- 1) 입법예고(2017.3.16. ~ 4.5. / 20일간) 결과 : 의견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영등포구”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로 한다.

제2조 중 “수수료”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로 한다.

제3조 중 “별표를 다음과”를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은 별표와”로 한다.

제5조제1항에 제1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2. 「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모범납세자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제5조제2항 중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으로 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15종)

(단위 : 원)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재산 및 지방세에 관한 증명 1) 삭제 2) 세목별 과세(납세)증명 3) 개별공시지가 확인서	1건 1필지 1필지	800 800	
나. 건축 및 주택에 관한 사항 1)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 확인서 2) 무허가건물 확인원	1주택 1호 1건	800 500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공장등록증명 2) 삭제 3) 삭제 4) 공장설립입지기준 확인 신청 5) 공장등록대상 등본 발급	1건 1건 1건	1,000 2,000 1,000	
라. 주소, 신상 및 직무에 관한 증명 1) 행정구역 명칭 변경증명 2) 삭제 3) 국제결혼증명(영문)발급 및 재발급 4) 부존재증명<신설>	1건 1매 1건	500 3,500 200	
마. 도시계획 및 확인에 관한 증명 1) 환지증명 또는 환지에정지 증명 2)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가) 흑백발급 나) 칼라발급	1필지 1필지 1필지	500 1,000 1,500	
바. 회계관계 증명 1) 삭제 2) 물품 또는 공사·용역 실적 증명	1건	1,000	
사. 기타 제증명 1) 기타 사실 공부 등에 의해 발급되는 증명	1건	500	

2. 각종 인·허가 및 신고사항(75종)

(단위 : 원)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인·허가에 관한 사항			
1) 사도개설허가 및 축조 허가 신청	1건	10,000	
2) 공연장 등록신청	1건	10,000	
3) 공연장 변경등록 신청	1건	5,000	
나. 신고·신청에 관한 사항			
1) 공유재산 대부신청			
가) 신규신청	1건	5,000	
나) 갱신 또는 기간 연장신청	1건	3,000	
2) 공유재산 매수신청	1건	2,000	
3)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법인)	1건	30,000	
4)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 신청서(개인)	1건	20,000	
5) 부동산중개사무소 개설등록증 재교부 신청 (법인, 개인)	1건	800	
6)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 설치신고	1건	10,000	
7) 부동산중개업 분사무소설치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	1건	800	
8) 삭제			
다. 의료기관 등 개설허가에 관한 인·허가 및 신고사항			
1)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개설허가	1건	100,000	
2) 종합병원,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요양병원 변경허가	1건	40,000	
3)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개설신고	1건	40,000	
4)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조산소 변경신고	1건	20,000	
5) 안경업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6) 치과기공소 개설등록 신청	1건	10,000	
7) 안경업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8) 치과기공소 양도양수 신고	1건	10,000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라. 공중위생에 관한 사항			
1) 종합유원시설업			
가)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1건	60,000	
나) 종합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30,000	
2) 일반유원시설업			
가)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조건부 영업허가) 신청	1건	50,000	
나) 일반유원시설업 허가사항 변경허가 신청(변경신고)	1건	15,000	
3) 기타유원시설업(종합유원시설업과 일반유원시설업은 제외한다)			
가) 기타유원시설업 신고	1건	30,000	
나) 기타유원시설업 신고사항 변경신고	1건	15,000	
4) 유원시설업 허가조건 이행내역 신고	1건	10,000	
5) 위생처리업	1건	20,000	
6) 위생처리업 변경	1건	10,000	
7) 세척제 제조업	1건	20,000	
8) 세척제 제조업 변경	1건	10,000	
9)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1건	20,000	
10) 기타 위생용품 제조업 변경	1건	10,000	
11) 장난감 제조업	1건	20,000	
12) 장난감 제조업 변경	1건	10,000	
13) 위 영업 양수신고 수수료는 각 종목별 신규영업허가(신고) 수수료에 준함			
마. 유통관련업 신고·등록에 관한 사항			
1)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	1건	20,000	
2) 비디오물 시청제공업 등록사항 변경	1건	5,000	
3) 일반게임장업 등록	1건	30,000	
4) 일반게임장업 등록사항 변경	1건	5,000	
5) 노래연습장업 등록	1건	20,000	
6) 노래연습장업 등록사항 변경	1건	5,000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	1건	20,000	
8)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변경	1건	5,000	
9) 음반·음악영상물 제작 및 배급업 신고	1건	20,000	
10) 음반·음악영상물 제작 및 배급업 변경	1건	10,000	
11) 비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 신고	1건	20,000	
12) 비디오물 제작 및 배급업 변경	1건	10,000	
13) 게임물 제작 및 배급업 등록	1건	20,000	
14) 게임물 제작 및 배급업 등록변경	1건	5,000	
15)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1건	20,000	
16) 온라인음악서비스 제공업 변경	1건	10,000	
17)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등록	1건	20,000	
18) 인터넷 컴퓨터게임 시설 제공업 등록 변경	1건	5,000	
19)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1건	20,000	
20) 청소년게임제공업 등록 변경	1건	5,000	
21) 영화상영권 신규 등록(신설)	1건	20,000	
22) 영화상영권 변경 등록(신설)	1건	10,000	
23) 영화업(제작·수입·배급·상영) 신규 신고(신설)	1건	20,000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24) 영화업(제작·수입·배급·상영) 변경 신고 〈신설〉	1건	10,000	
25) 영화업 신고증 재교부 신청 〈신설〉	1건	5,000	
26) 음반·음악영상물제작업 등의 신고증 또는 등록증 재교부 수수료	1건	4,000	
바. 체육시설업 신고에 관한 사항			
1) 체육시설업 신고	1건	30,000	
2) 체육시설업 변경	1건	10,000	
사. 어업 수산업에 관한 사항			
1) 어업권원부의 열람 및 등본. 초본 발급	1건	800	
2) 어선원부의 열람 및 등본. 초본 발급	1건	800	
3) 관리선사용지정 및 어선사용승인 신청	1건	1,000	
4) 어업허가증(어업신고증명서)의 재발급	1건	1,000	
아. 소음·진동배출시설 허가 및 신고 등에 관한 사항			
1)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허가	1건	10,000	
2) 소음·진동배출시설 설치 신고	1건	5,000	
자. 석유판매에 관한 사항			
1) 석유판매업(주유소)등록	1건	20,000	
2) 석유판매업(용제판매소)등록	1건	10,000	
3) 석유판매업(일반판매소, 항공유판매업, 특수판매소)신고	1건	10,000	
4) 석유대체연료판매업(주유소)등록	1건	20,000	
5) 석유대체연료판매업(판매소) 등록	1건	10,000	
차. 비료생산업 및 수입업에 관한 사항			
1) 비료생산업 등록	1건	30,000	
2) 비료수입업 신고	1건	20,000	

3.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사항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테이프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20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6,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3"×5" 200원 5"×7" 300원 8"×10" 400원
마이크로 필름·슬라이드 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2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롤마다 1,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컷마다 3,0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전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본(종이출력물)

공개 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파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A3 이상 30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 1MB(메가바이트) 이내: 무료 - 1MB 초과 시 1MB마다 100원 (다만, 10장마다 1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 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건(700MB 기준)마다 5,000원 - 700MB 초과 시 350MB마다 2,500원 ※ 매체비용은 별도

< 비고 >

1.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2.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

하여 산정할 수 있다.

3.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청구사항(1종)

종 목	단 위	수수료액	비 고
가. 주택임대차 계약서에 관한 사항 1) 주택임대차계약서 확정일자 부여	1건	600원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137조와 제139조에 따라 <u>영등포구</u>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의 종류와 금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u>----- ----- -----.</p>
<p>제2조(적용) <u>수수료</u>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 따라 징수한다.</p>	<p>제2조(적용) <u>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서 징수하는 수수료(이하 “수수료”라고 한다.)</u>----- -----.</p>
<p>제3조(종류 및 요액) <u>별표</u>를 다음과 같이 한다.</p>	<p>제3조(종류 및 요액) <u>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은 별표와</u> --.</p>
<p>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의 제1호 제증명 확인 발급 수수료를 징수 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부터 제11호까지 해당하는 증명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자로서 그 신분을 확인할 수 있어야 하며, 상업적 이용을 목적으로 하는 반복적 증명발급은 제외한다.</p>	<p>제5조(수수료의 면제) ① ----- ----- ----- ----- ----- ----- ----- ----- ----- ----- ----- -----.</p>
<p>1. ~ 11. (생략) <u><신설></u></p>	<p>1. ~ 11. (현행과 같음) 12. 「<u>서울특별시 모범납세자 등의 지원에 관한 조례</u>」에 따른 모범</p>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
률 시행령」 제17조제3항의 규정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행정정보공개
에 관한 수수료를 100분의 50 경
감할 수 있다.

납세자의 세목별 과세증명서

②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법
률 시행령」 제17조제3항-----

-----.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15종)

(단위 : 원)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 나. (현행과같음)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현행과같음)	1건	500	
2) 식품환경 영업허가 (휴·폐업)사실증명	1건	1,000	
3) 의료기관약국 (휴·폐업)사실증명			
4) ~ 5)(현행과같음)			
라. ~ 사 (현행과같음)			

2. ~ 4. (현행과같음)

수수료의 종류 및 징수금액(제3조 관련)

1. 제증명 확인 발급사항(15종)

(단위 : 원)

종 목	단위	수수료액	비고
가. ~ 나. (현행과같음)			
다. 사실 및 실적에 관한 증명			
1) (현행과같음)			
2) 삭제			
3) 삭제			
4) ~ 5)(현행과같음)			
라. ~ 사 (현행과같음)			

2. ~ 4. (현행과같음)